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엔에이치엔페이코㈜

2. 제재조치일 : 2022. 3. 7.

3. 제재조치내용

대 상	내용
기 관	과태료 부과 (2,720만원)
임직원	주의 2명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주의상당) 1명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

(1) 내부 업무용시스템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망분리 이행 위반

① 전자금융업자는「전자금융거래법」제21조 제2항,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제7조 및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(무선통신망 포함)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·차단 및 접속을 금지하여야 하는데도

회사는 OOOO.O.O. ~ OOOO.O.O. 기간 중 내부통신망에 연결된 본사 임직원의 업무단말기를 일부 외부통신망과 분리·차단하지 않고 접속한 상태로 운영한 사실이 있음

② 전자금융업자는「전자금융거래법」제21조 제2항,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제7조,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고

「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」제2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및 제3항에 따라 망분리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업자가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OOOO.O.O. ~ OOOO.O.O. 기간 중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저장·관리하고 있는 OOOO서버(OO대) 및 OOOO OO서버(OO대)를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았고

OOOO.O.O. ~ OOOO.O.OO. 기간 중 OOO서버(OO대)에 대해서는 망분리 적용 예외로 인정하기 위한 정보보호위원회 승인 없이 외부통신망과 연결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규정 >

- 1. 「전자금융거래법」제21조제2항
- 2. 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제7조, 제15조제1항 제3호, 제5호
- 3. 「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」제2조의2

나. 전자금융거래 변경약관 이용자 통지 위반

전자금융업자는「전자금융거래법」제24조 제3항 및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제40조 제4항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

회사는 'OOOOO이용약관'을 OOOO.O.O., OOOO.O.O. 2회 변경·시행하면서, 시행일 1월 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< 관련규정 >

- 1.「전자금융거래법」제24조제3항
- 2. 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 제40조제4항